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5207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5207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1. 3. 30 선고 2000나717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농업협AAA중앙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구BA

【원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01. 3. 30. 선고 2000나717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금 9,340,050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원고는 정해진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DA상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1997. 12. 13.자 할인어음거래 대출금 29,162,69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1999. 10. 30.경 소외 유CA이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하였던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인천지방법원 98타경169673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으로 위 1997. 12. 13.자 대출금 중 원금채무 전액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에 대한 1998. 4. 1.부터 1999. 10. 29.까지의 지연손해금 9,340,0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제1심법원에 제출한 1999. 11. 3.자 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와 그에 붙은 부기문 및 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경매사건에서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을 포함하여 원금 199,162,697원과 이자 금 59,382,250원을 요구하였는데 경매법원으로부터 금 95,688,955원만을 배당받아 위 원금 중 일부에 충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민법 제476조에 의한 지정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도 허용될 수 없으며,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방법인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정변제충당은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과 원본 간에는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과 원본의 순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바(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이와 같은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의하여 위 배당금을 충당하는 경우 이 사건 대출금의 지연손해금이 소멸되었을 것임은 계산상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원고의 충당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대출금의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았으니, 여기에는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는 이유 있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소외 김CB에게 공제대출의 방식으로 금 30,000,000원을 이자는 연 13%, 변제기는 1997. 9. 17.로 정하여 대여함에 있어서 지연손해금은 연 19%로 하되 후에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연이율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위 김CB은 위 대여원금 중 금 25,738,458원 및 이에 대한 1998. 6. 25. 이후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위 대여금에 대한 원고 소정의 지연이율은 1998. 6. 25.부터 1998. 8. 24.까지는 연 17.5%, 그 다음날부터 1998. 10. 6.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1. 8.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1%인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원금의 잔액 및 이에 대한 위 인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위 김CB이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위 대여금을 대출받을 당시 그 계약에 원고의 농협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될 것을 약정하였는데, 그 기본약관에 의하면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지급할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대하여는 원고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이를 변경할 수 있고 채무자는 이에 따르기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위 인정과 같이 변경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 아래 위 인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조치는 정당하여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연대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주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설사 피고가 위 대출기간의 연장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연장 후의 이율변동 내용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함에는 영향이 없으며, 이 사건 대출에 있어서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하여 약관의 내용과 다른 개별약정이 존재하였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는 이 부분 채무와 관련하여서는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를 제기하였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소외 회사에 대한 보증채무 중 지연손해금

9,340,050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이를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의 상고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